

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
| 의안번호         | 제 559 호              |
| 의 결<br>연 월 일 | 2013년 월 일<br>(제325회) |

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|       |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|
| 제 출 자 | 충 청 북 도 지 사  |
| 제출연월일 | 2013년 11월 4일 |

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침

##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|          |     |
|----------|-----|
| 의안<br>번호 | 559 |
|----------|-----|

제출연월일 : 2013년 11월 4일

제 출 자 : 충 청 북 도 지 사

### 1. 제안사유

- 「지방공무원법」 개정에 따른 공무원 직종개편을 위하여 기능직·별정직·계약직을 직렬 또는 직위에 맞게 일반직 등으로 전환

### 2. 주요내용

- 기능직·별정직·계약직 직종전환(정원의 총수 3,118명 : 변동없음)

| 구 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일반직                     | 기능직               | 별정직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
|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증194<br>(1,223 → 1,417) | △186<br>(186 → 0) | △8<br>(20 → 12) |
| · 기능직 → 일반직                    | 186                     | △186              | -               |
| · 별정직 → 일반직<br>※ 전문경력관 9명 포함   | 12                      | -                 | △12             |
| · 일반직(계약직) → 별정직<br>※ 비서 및 보좌관 | △4                      | -                 | 4               |

3. 의안전문 : 붙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5. 관계법령 발췌 : 붙임

6. 비용추계서 : 해당 없음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##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 단서 중 “직급별 정원”을 “직급별 정원(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)”으로 한다.

별표 1, 별표 2,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### 부칙

이 조례는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| 현      행   | 개    정    안   |
|--|---|
| <p>제4조(직급별 정원)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. 다만, 5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<u>직급별 정원</u>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 | <p>제4조(직급별 정원)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. 다만, 5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<u>직급별 정원(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)</u>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 |

[별표 1]

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채정기준(제3조제1항 관련)

|     |        |         |
|-----|--------|---------|
| 구 분 | 일반직    | 별정직·정무직 |
| 비 율 | 99% 이상 | 1% 이내   |

※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·지도직,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.

[별표 2]

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채정기준(제3조제2항 관련)

1. 일반직공무원

|     |       |        |        |        |        |       |
|-----|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|
| 구 분 | 4급 이상 | 5급     | 6급     | 7급     | 8급·9급  | 전문경력관 |
| 비 율 | 6% 이내 | 18% 이내 | 32% 이내 | 33% 이내 | 10% 이상 | 1% 이내 |

2. 연구직·지도직공무원

|     |        |        |        |        |
|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
| 구 분 | 연구직    |        | 지도직    |        |
|     | 연구관    | 연구사    | 지도관    | 지도사    |
| 비 율 | 16% 이내 | 84% 이상 | 26% 이내 | 74% 이상 |

3. 소방직공무원

|     |        |       |       |      |        |        |        |
|-----|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
| 구 분 | 소방정 이상 | 소방령   | 소방경   | 소방위  | 소방장    | 소방교    | 소방사    |
| 비 율 | 1% 이내  | 3% 이내 | 6% 이내 | 8%이내 | 14% 이내 | 31% 이내 | 37% 이상 |

4. 별정직공무원

|     |         |        |        |        |        |       |
|-----|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|
| 구 분 | 4급상당 이상 | 5급상당   | 6급상당   | 7급상당   | 8급상당   | 9급상당  |
| 비 율 | 10% 이내  | 50% 이내 | 10% 이내 | 10% 이내 | 18% 이내 | 2% 이상 |

※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채정된 정원을 포함한다.

[별표 3]

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(제4조 관련)

| 기관별<br>직급별          | 총계    | 본 청 | 의 회 | 직속기관 | 사업소 | 출장소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|-----|------|-----|-----|
| 총 계                 | 3,118 | -   |     |      |     |     |
| 정무직 계               | 1     | 1   |     |      |     |     |
| 도지사                 | 1     | 1   |     |      |     |     |
| 일반직 계               | 1,417 | -   |     |      |     |     |
| 1~2급                | 1     |     |     |      |     | 1   |
| 2~3급                | 1     |     | 1   |      |     |     |
| 3급                  | 11    | 9   |     | 1    |     | 1   |
| 3~4급                | 2     | 2   |     |      |     |     |
| 4급                  | 66    | 41  | 7   | 5    | 7   | 6   |
| 5급이하 소계             | 1,327 | -   |     |      |     |     |
| 전문경력관 소계            | 9     | -   |     |      |     |     |
| 별정직 계               | 12    | -   |     |      |     |     |
| 1급 상당               | 1     | 1   |     |      |     |     |
| 5급상당 이하 소계          | 11    | -   |     |      |     |     |
| 연구직 계               | 143   | -   |     |      |     |     |
| 연구관                 | 23    | 1   |     | 20   | 2   |     |
| 연구사                 | 120   | -   |     |      |     |     |
| 지도직 계               | 24    | -   |     |      |     |     |
| 지도관                 | 6     |     |     | 6    |     |     |
| 지도사                 | 18    | -   |     |      |     |     |
| 소방직 계               | 1,479 | -   |     |      |     |     |
| 소방정                 | 12    | 3   |     | 9    |     |     |
| 소방령이하               | 1,467 | -   |     |      |     |     |
| 교육공무원 계             | 42    | -   |     |      |     |     |
| 총장                  | 1     |     |     | 1    |     |     |
| 교수·부교수·<br>조교수·전임강사 | 30    |     |     | 30   |     |     |
| 조교                  | 11    | -   |     |      |     |     |

※ 복수별정은 별정에 포함

## 관련 법령 발췌

### □ 지방공무원법

제2조(공무원의 구분) ①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(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말하며, 이하 "공무원"이라 한다)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.

② "경력직공무원"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(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)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,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2.12.11>

1. 일반직공무원 : 기술·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
2. 특정직공무원 : 공립 대학 및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,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, 자치경찰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과 그 밖에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 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

3. 삭제 <2012.12.11> ※ 기능직공무원 삭제

③ "특수경력직공무원"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,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2.12.11>

1. 정무직공무원

- 가.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지방의회의 동의를 필요한 공무원
- 나. 고도의 정책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

2. 별정직공무원: 비서관·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

3. 삭제 <2012.12.11> ※ 계약직공무원 삭제

4. 삭제 <2011.5.23>

④ 제3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, 임용절차, 근무 상한연령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. <개정 2011.5.23, 2012.12.11>